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각장애우의 실직 형태에서 보여지듯이 본인의 능력에 무관하게 장애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의 직장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관리 담당자와 청각장애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생활 상담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배치나 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 9 장 실업정신지체장애인 실태와 대책

1.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과 직업

1)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장애적 특성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활동 가능성은 그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활동상의 제한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 구조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상의 제한은 지적 기능의 손상에 따른 인지적·지능적 기능의 제한과 이로 인한 지적인 활동이나 복잡한 직업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제한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장애가 선천적 혹은 출생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더불어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2차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비장애인처럼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는 데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립과 직업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때, 다음의 6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1983; Meyer, Peck & Brown, 1991; 김용득, 1999에서 재인용). 첫째, 정신지체장애인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신지체의 정의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자기관,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교과, 여가 활용, 직업 기술의 10가지 영역에서 각 개인의 기능적 제한의 완화에 중요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지체장애인은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인은 기술의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장애인은 기술습득을 위한 시간의 양과 훈련의 횟수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횟수로 시도해야 한다. 넷째, 정신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의 비율이 높고, 망각된 기술을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 따라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된 기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신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습득한 기술을 일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여섯째, 정신지체장애인은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다른 유형의 기술로 연결하기가 힘들며,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장애정도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인의 교육 혹은 훈련기능정도를 분류하고 있다. 즉 '사회성숙도검

'사지' (김승국, 김옥기, 1985)를 통해 얻어진 총점을 사회지수로 환산한 후, 이를 정신지체아 판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즉 사회지수가 24이하인 경우를 중등 및 최중등, 또는 요보호 정신지체장애우로 보았는데 이들 중도 정신지체장애우는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지수 25이상 54이하인 중등도 또는 훈련 가능급의 정신지체장애우는 40.4%이고 사회지수 55이상인 경도 또는 교육 가능급의 정신지체장애우는 18.8%로 조사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독립과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작업기술의 영역과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중심으로 수행가능하며, 일단 학습한 기술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획득과 유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활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그의 기능적, 활동적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요인의 인식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의 초점은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확인된 욕구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발달지체정도 의형적 특성은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제공될 수 있는 원조, 지지 및 교육적 기회와 연관되어 있다⁵⁾(Brodwin, 1993). 정신지체장애우는 그의 무력감은 학습되고⁶⁾ 환경에 의하여 제한 받으며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한정된다. 이에 정신지체장애우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Marc Gold (1980)는 "... 훈련과정에 필요한 힘은 장애우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하는 제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지체우의 기능적 수준은 생물학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훈련기법의 유용성 및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직업활동 가능성은 이같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환경, 기회와 기대에 따라 제한된다.

2. 고용과 관련된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점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첫째,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두 번째는 항상 낮은 고용률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높은 이직률과 관련된 문제이다.

1)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신지체 장애우

5) Brodwin은 그외에 정신지체장애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정신지체인의 관심과 강도는 비장애인처럼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둘째, 정신지체인의 성격은 예를 들어, 조용함, 수줍음, 난폭함, 수다스러움, 우호적 등 비장애인처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Brodwin, 1993).

6) 시설이나 특수학교, 작업장, 활동센터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은 학습된 무력감이다(Payne & Patton, 1981). 이 현상은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결론이 없고 나타난 결과로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어쩔 수 없음을 반복 경험할 때, 복종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술력, 독립심, 또는 주위사물에 대한 자각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학습한다. 즉 자기자신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는 다분히 주위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우는 신체적인 손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고용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우는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 특수학교의 전공과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직업적 재활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시설 수용 중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중심으로, 보호고용의 작업장에서 지원고용의 일반경쟁고용으로 변화되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일반고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도 지원고용의 프로그램이 서부장애인복지관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2) 정신지체장애우의 항상 낮은 고용률

정신지체장애우는 경기변동이나 실업률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경기지표의 변화와 큰 상관없이 항상 고용이 어렵다.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현황은 경제활동을 하는 정신지체장애우 중 25.4%만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4.6%는 미취업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표 9-1〉 특수학교(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졸업	진학	취업자			
			소개	특공	인쇄	기타
정신지체졸업자수	253	63	52	2	4	6

자료 : 교육부, 『98년 교육통계연보』.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전환과정 결과 전일제, 시간제 혹은 보호작업장의 취업자는 30.0%였다. 취업자들은 대부분 직업분류 사전의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준기 1995).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가사협조 내지 가정수용이 전체의 50% 이상을 상회하였다. 94년 2월 졸업생은 54.9%, 95년 3월 졸업생은 55.7%, 96년 2월 졸업생은 50.8%였다. 일반사업체 취업은 16.2%에서 19.3% 정도였으며, 보호작업장 취업은 일반사업체 취업의 약 절반정도인 7.2%에서 9.5% 사이였다. 이 외에 시설수용과 직업훈련원 등록이 각각 7-10% 정도 차지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1996).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2〉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현황(1997. 12. 31. 현재)

계	어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업
159	1	128	6	2	2	10	1	7	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년 장애인고용통계』.

이러한 수치는 당시 고용되어 있던 전체 장애우근로자수 10,331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8년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전체 구인이 6,966명일 때 정신지체장애우 구인은 334명이고, 구직은 전체가 15,287명일 때 정신지체장애우는 2,064명, 취업알선은 전체가 9,747명일 때 965명, 취업은 전체가 5,027명일 때 627명이었다.

97년말 정신지체 구직자는 2,064명이었으나 구인은 단 334명으로 구인비율이 0.16%로 나타났고 또한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미취업자는 전체의 52.0%였으나 이중에 55%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곽준기 1995). 즉 정신지체장애우도 직업을 갖고 싶은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신지체장애우의 높은 이직률

정신지체장애우는 다른 유형의 장애우보다도 취업이 어려우면서도 취업 후 이직률도 높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들 중 57.4%가 근무기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곽준기, 1995)고 한다.

Schalock 와 Harper는 독립생활 기술과 경쟁 고용에서의 성공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독립생활 기술을 적절히 행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직무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Wehman, P., McLaughlin, P. J. 1980; 이청자의 글에서 재인용). Calkins와 Walker도 실직한 발달장애우의 40% 이상은 직무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정신지체장애우를 비교적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직무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적응 기술의 부족이라고 한다(김승국 1995). 즉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행동 교정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간과된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교육·훈련은 정신지체장애우가 직업을 보유하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 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고 다양하나 일이 너무 어려워서 28.1%,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21.1%,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와 장애가 너무 심해서가 각각 5.3%였다(곽준기 1995).

학생은 졸업 후 가장 합리적인 진로선택은 모든 교사가 취직이라고 대답했으며, 정신지체장애우의 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교육 16.2% 보다는 생활훈련 57.4%로 응답했고, 진로 선택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기술 및 사회적응 능력 부족이라고 57.4%가 응답하였고, 진로 교육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한경에 199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정신지체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1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근로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57.1%가 작업능력 부족을, 17.6%는 인간관계

의 어려움, 19.8%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못하는 것에 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에서 직무 전환의 어려움, 공동작업의 어려움, 임업 불가능 등 작업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신변처리문제, 유아적 행동, 일상생활 기술부족 등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취업 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업과 관련된 훈련을 미리 받는 것에는 18.2%가 반응한 반면 취업 전에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44.3%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익혀야 함'에 36.4%가 응답하여 대다수가 작업지도 보다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3.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태와 욕구

1) 일반적 특성

〈표9-3〉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항 목	유형별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별	여	16.7(1)	0.0(0)	31.3(5)
	남	83.3(5)	100.0(3)	68.8(11)
연령	20대	66.7(4)	33.3(1)	31.3(5)
	30대	16.7(1)	33.3(1)	31.3(5)
	40대	16.7(1)	0.0(0)	18.8(3)
	50대	0.0(0)	33.3(1)	12.5(2)
	60대	0.0(0)	0.0(0)	6.3(1)
학력분포	무학	16.7(1)	0.0(0)	18.8(3)
	초등졸	16.7(1)	0.0(0)	37.5(6)
	중졸	16.7(1)	33.3(1)	25.0(4)
	고졸	50.0(3)	66.7(2)	18.8(3)
장애등급	1급	16.7(1)	33.3(1)	0.0(0)
	2급	50.0(3)	66.7(2)	40.0(6)
	3급	33.3(2)	0.0(0)	53.3(8)
	4급	0.0(0)	0.0(0)	63.7(1)
	5급	0.0(0)	0.0(0)	4.2(1)
주택소유형태	자가	16.7(1)	33.3(1)	12.5(2)
	전세	0.0(0)	33.3(1)	6.3(1)
	월세	50.0(3)	0.0(0)	25.0(4)
	영구임대	16.7(1)	0.0(0)	56.3(9)
	기타(전세집·무상으로)	16.7(1)	33.3(1)	0.0(0)
생활보호	예	16.7(1)	66.7(2)	46.7(7)
	아니오	83.3(5)	33.3(1)	53.3(8)
거주지 특성	대도시	100.0(6)	33.3(1)	56.3(9)
	중소도시	0.0(0)	0.0(0)	37.5(6)
	농·어·산촌	0.0(0)	66.7(2)	6.3(1)
전체		100.0(6)	100.0(3)	100.0(16)
				100.0(25)

본 실태조사 대상⁷⁾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주로 도시에 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20-30대의 미혼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성별비율도 남성 중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76%가 남성이며 특히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와 IMF이전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에게서 남성집중률이 더욱 높아 83.3%와 100%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적 특성을 검토하면, 평균적으로 가구원이 2-3명이고 41.7%의 가족이 본인이외의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며 68%의 가족이 월세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 중 41.7%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IMF이후에 실직한 장애우의 가족들은 겨우 16.7%만이 생활보호대상이라는 점이다.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의 68%가 월세 및 영구임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88%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특히 64%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가 100% 모두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실직전 현황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은 1-2년과 2-5년 전에 실직된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2년 미만의 실직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77.7%에 미치고 있어 최근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의 실직 정신지체장애우가 실직 전에 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형 실직자의 경우도 60%에 이르러 IMF이후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가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였던 정신지체장애우 가운데 정규직이 40.0%이고 나머지 60.0%는 임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전체 실직장애우의 49.5%가 정규직인 것에 비하면, 정신지체장애우는 비교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임금 근로자의 형태에서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는 조사대상자의 100% 모두가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구분	유형별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 전 임금근로자 여부	예	60.0%(3)	62.5%(5)
	아니오	40.0%(2)	37.5%(3)
전체	100.0%(5)	100.0%(3)	100.0%(8)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경우 실직 전 주로 근무했던 직종은 단순직(87.5% 경우)이며 그 외에도 노

7) 조사대상자중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단 25사례로서 전체 정신지체장애우를 대표하는 통계적인 대표성을 갖기는 힘들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검토하면 실직한 저소득층 정신지체장애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5〉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직전 종사형태

구분	유형별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50.0%(2)	0.0%(0)
종사형태 (실직전)	임시직	0.0%(0)	33.3%(1)
	일용직	25.0%(1)	33.3%(1)
비임금근로자	무급가족	25.0%(1)	33.3%(1)
종사형태(실직전)	종사자		
전체	100.0%(5)	100.0%(3)	100.0%(8)

점과 좌판(12.5% 경우)이었다. 업종으로는 주로 제조업이었으며 농림어업도 1 경우 있었다. 사업장의 규모는 87.5%가 100인 미만의 규모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62.5%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직종이나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예측된다. 실직 전 사업장의 규모 면에서는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한 경우는 오직 한 경우였고 10-29인 이하는 37.5%로 가장 많고 30-99인 이하가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전직종 및 업종

구분	유형별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직종	단순직	100.0%(5)	66.7%(2)
	노점, 좌판	0.0%(0)	33.3%(1)
실직전 업종	제조업	80.0%(4)	33.3%(1)
	농림어업	0.0%(0)	33.3%(1)
	기타	20.0%(1)	33.3%(1)
전체	100.0%(5)	100.0%(3)	100.0%(8)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이유를 검토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4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들은 해고, 권고사직, 명퇴된 경우가 50.0% 경우, 일거리가 없음이 50.0% 경우로 해서 IMF로 인한 구조적 실업임을 알 수 있다.

〈표 9-7〉 실업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이유

구분	유형별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 이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0.0%(0)	33.3%(1)
	해고, 권고사직, 명퇴	50.0%(2)	0.0%(0)
	건강, 고령으로	0.0%(0)	33.3%(1)
	일거리없음	50.0%(2)	33.3%(1)
전체	100.0%(4)	100.0%(3)	100.0%(7)

3) 실직후 생활의 변화

실직후 정신지체장애우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의 변화를 검토하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33.3%-100.0%로서 대부분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의 변화 상태를 보면, 스트레스의 정도(100.0%, 6 경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후 건강이 악화된 편이라고 한 정신지체장애우는 83.5%, 장애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한 경우는 33.3%로서, 정신지체장애우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래에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가족간의 관계의 어려움의 정도를 검토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직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조사응답자 100%인 6의 경우가 모두 어려워졌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늘어나는 부채의 정도가 많다고 대답한 경우가 66.6%로 정신지체장애우 본인의 실직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

〈표 9-8〉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후 생활의 변화

구 분	유 형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건강 변화	매우 그렇다	33.3%(1)	33.3%(1)	33.3%(2)
	보통	66.7%(2)	33.3%(1)	50.0%(3)
	그렇지 않다	0.0%(0)	33.3%(1)	16.7%(1)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매우 그렇다	33.3%(1)	33.3%(1)	33.3%(1)
	보통	0.0%(0)	33.3%(1)	16.7%(1)
	그렇지 않다	66.7%(2)	33.3%(1)	50.0%(3)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매우 그렇다	33.3%(1)	66.7%(2)	50.0%(3)
	그렇다	66.7%(2)	33.3%(1)	50.0%(3)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매우 그렇다	66.7%(2)	100.0%(3)	83.3%(5)
	그렇다	33.3%(1)	0.0%(0)	16.7%(1)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매우 그렇다	33.3%(1)	33.3%(1)	33.3%(2)
	그렇다	33.3%(1)	33.3%(1)	33.3%(2)
	보통	0.0%(0)	33.3%(1)	16.7%(1)
	그렇지 않다	33.3%(1)	0.0%(0)	16.7%(1)
부부, 가족관계 악화정도	매우 그렇다	33.3%(1)	66.7%(2)	50.0%(3)
	보통	66.7%(2)	0.0%(0)	33.3%(2)
	그렇지 않다	0.0%(0)	33.3%(1)	16.7%(1)
자녀교육비 감소정도	매우 그렇다	33.3%(1)	50.0%(1)	40.0%(2)
	그렇다	33.3%(1)	50.0%(1)	40.0%(2)
	보통	33.3%(1)	0.0%(0)	20.0%(1)
	무용답	0.0%(0)	0.0%(0)	0.0%(1)
실직후 이전가족 유무	예	66.7%(2)	33.3%(1)	50.0%(3)
	아니오	33.3%(1)	66.7%(2)	50.0%(3)
전 체		100.0%(3)	100.0%(3)	100.0%(6)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비감소를 경험한 정신지체장애우는 80.0%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실직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정신지체장애우는 50.0%로서 절반에 이르는 경우가 가족관계의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의 악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16.7%정도밖에 안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후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50.0%가 있다고 대답하여 정신지체장애우의 건강, 장애, 스트레스와 함께 가족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9〉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계유지수단

구 분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본인의 근로소득		0.0%(0)	33.3%(1)	12.5%(2)	12.0%(3)
타가족원의 근로소득		16.7%(1)	66.7%(1)	25.0%(4)	28.0%(7)
자축		0.0%(1)	33.3%(1)	0.0%(0)	4.0%(1)
친척, 친지		0.0%(0)	33.3%(1)	12.5%(2)	12.0%(3)
사회기관		16.7%(1)	33.3%(1)	25.0%(4)	24.0%(6)
실업급여		33.3%(2)	0.0%(0)	0.0%(0)	8.0%(2)
빚을 일어		50.0%(3)	0.0%(0)	6.3%(1)	16.0%(4)
이웃의 도움		0.0%(0)	66.7%(2)	6.3%(1)	12.0%(3)
정부 보조금		16.7%(1)	66.7%(2)	37.5%(6)	36.0%(9)
공공근로		16.7%(1)	33.3%(2)	0.0%(0)	8.0%(2)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36.0%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이 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이다. 그 다음으로는 타 가구원의 근로소득(28.0%), 사회기관(24.0%)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우들이 유지하는 방법들 보다 사회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실업자들의 경우(4 케이스)가 사회기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은 빚을 일어(3 케이스), 실업급여(2 케이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정부시책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은 40대(10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0대(66.7%), 20대(33.3%), 30대(2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적용율이 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정부시책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특성에 따라 검토하면, 농, 어, 산촌의 경우는 66.7%, 중소도시의 경우가 60.0%로 많은 비율의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정부시책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도시의 경우 33.3%로 다른 유형의 도시에 비해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정부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검토하면, IMF 이전 실직자들이 66.7%로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하여 약간 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현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의 80%, 10만원미만인 경우에 66.7%가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가구 총소득이 30만원미만인 경우의 57.1%, 31~50만원미만의 100%가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10〉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연령, 거주지 특성, 실직자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유형별 구 分		20대					거주지 특성			실직자유형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 산촌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 실업자	
정부로 부터 1개 이상 지원 예	아니오	66.7 %(6)	71.4 %(5)	0.0 %(0)	33.3 %(1)	100.0 %(1)	66.7 %(10)	40.0 %(2)	33.3 %(1)	60.0 %(3)	33.3 %(1)	60.0 %(9)	56.5 %(13)
	예	33.3 %(3)	28.6 %(2)	100.0 %(3)	66.7 %(2)	0.0 %(0)	33.3 %(5)	60.0 %(3)	66.7 %(2)	40.0 %(2)	66.7 %(2)	40.0 %(6)	43.4 %(10)
	전체	100.0 %(9)	100.0 %(7)	100.0 %(3)	100.0 %(1)	100.0 %(15)	100.0 %(5)	100.0 %(3)	100.0 %(5)	100.0 %(3)	100.0 %(15)	100.0 %(23)	

〈표9-11〉 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현총가구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유형별 구 分		현 개인소득					현 총가구 소득					전체
		없음	10만원 미만	10~30 만원미만	30~50 만원미만	50~70 만원미만	30만원 미만	31~50 만원미만	51~99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무응답	
정부로 부터 1개 이상 지원 예	아니오	80.0 %(8)	66.7 %(2)	33.3 %(2)	100.0 %(1)	0.0 %(0)	57.1 %(8)	100.0 %(4)	0.0 %(0)	100.0 %(1)	-	59.1 %(13)
	예	20.0 %(2)	33.3 %(1)	66.7 %(4)	0.0 %(0)	100.0 %(2)	42.9 %(6)	0.0 %(0)	100.0 %(2)	0.0 %(0)	(1)	40.9 %(9)
	전체	100.0 %(10)	100.0 %(3)	100.0 %(6)	100.0 %(1)	100.0 %(2)	100.0 %(14)	100.0 %(4)	100.0 %(2)	100.0 %(1)	(1)	100.0 %(22)

〈표9-12〉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유형별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 별	없음	50.0%(2)	33.3%(1)	46.7%(7)	45.5%(10)
	10만원 미만	25.0%(1)	0.0%(0)	13.3%(2)	13.6%(3)
	10~30만원 미만	25.0%(1)	33.3%(1)	26.7%(43)	27.3%(6)
	30~50만원 미만	0.0%(0)	0.0%(0)	6.7%(1)	4.5%(1)
	50~70만원 미만	0.0%(0)	33.3%(1)	6.7%(1)	9.1%(2)
현총가구 소득	30만원 미만	33.3%(1)	66.7%(2)	73.3%(11)	66.7%(14)
	31~50만원 미만	33.3%(1)	0.0%(0)	20.0%(3)	19.0%(4)
	50~100만원 미만	0.0%(0)	33.3%(1)	6.7%(1)	9.5%(2)
	100~150만원 미만	33.3%(1)	0.0%(0)	0.0%(0)	4.8%(1)
	무응답	(1)	-	-	-
전체		100.0%(4)	100.0%(3)	100.0%(15)	100.0(22)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현 개인소득수준은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86.4%가 30만원미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직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의 총소득이 50만원 미만에 머무르는 가족이 조사대상가족전체의 85.7%나 된다는 것은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이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가구의 소득감소액은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모두 50만원이상이며 IMF이전 실직자와 만성실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50만원미만의 소득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13〉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가구소득감소 규모

유형별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가구 소득 감소 액범	30만원 미만	0.0%(0)	33.3%(1)	75.0%(3)	40.0%(4)
	30~50만원 미만	0.0%(0)	33.3%(1)	25.0%(1)	20.0%(2)
	50~100만원 미만	66.7%(2)	0.0%(0)	0.0%(0)	20.0%(2)
	100~150만원 미만	33.3%(1)	33.3%(1)	0.0%(0)	20.0%(2)
전체		100.0%(3)	100.0%(3)	100.0%(4)	100.0(10)

4) 구직활동의 실태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응답자 24명 중 54.2%인 13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미미한 차이이지만 만성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고용에 대한 욕구

취업활동이 활발한 연령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우 중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절반정도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 가량 된다. 보사연의 자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30%정도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연령이 들어가면 갈수록 장애정도가 중증화되는데 조사대상이 고연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업 정신지체장애우의 응답자 24명 중 54.2%인 13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미미한 차이이지만 만성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14〉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희망여부

유형별 구 分		94년도 공단	95년도 보사연	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도시 등록 장애우	15세이상(노인 포함)	저소득 실직 장애우
일자리를 원하기?	예	50.4%(68)	29.2%	54.2%(13)
	아니오	49.6%(67)	70.8%	45.8%(11)
전체		100.0%(135)	100.0%(128)	100.0%(24)

〈표9-15〉 실업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종사형태

구 分	유형별	94년도 공단	95년도 보사연	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도시 등록 장애우	15세이상(노인 포함)	저소득 실직 장애우
희망 종사 형태	정규직	36.5%(19)	88.2%(33)	28.0%(7)
	자영업자	3.8%(2)	6.4%(2)	4.0%(1)
	무용감	0.0%(0)	0.0%(0)	68.0%(17)
	보호작업장	46.1%(24)	0.0%(0)	0.0%(0)
	아무거나	0.0%(0)	5.4%(2)	0.0%(0)
전체		100.0%(135)	100.0%(128)	100.0%(25)

정신지체장애인의 희망하는 종사형태를 위의 표에서 검토하면, 자영업보다는 정규직,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 분석한 김은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1)취업을 앞둔 정신지체장애인은 동물사육이나 가사·청소, 원예 및 그 유관직종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성별 직업흥미 경향은 비교적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자는 자동차 정비 및 건물 손질·관리나 그 유관 직종과 동물 사육, 원예, 가사·청소 영역에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여자는 사무보조, 식당 서비스, 간병, 대인서비스, 세탁, 물품 운반·관리 분야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3)사회 연령별로 볼 때, 사회연령이 낮은 연령층에서는 자동차 정비와 건물 손질·관리, 원예 등을 선호한 반면, 높은 연령층에서는 대인 서비스나 식당 서비스, 사무보조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9-16〉 실업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구 分	유 형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 별	본인이 실직해서	33.3%(1)	33.3%(1)	28.6%(2)	30.8%(4)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실직해서	0.0%(0)	0.0%(0)	28.6%(2)	15.4%(2)
	소비지출이 늘어서	33.3%(1)	33.3%(1)	28.6%(2)	30.8%(4)
	빚 때문에	0.0%(0)	0.0%(0)	14.3%(1)	7.7%(1)
	본인의 학비, 용돈	0.0%(0)	33.3%(1)	0.0%(0)	7.7%(1)
	기타	33.3%(1)	0.0%(0)	0.0%(0)	7.7%(1)
	소계	100.0%(6)	100.0%(3)	100.0%(15)	100.0%(24)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33.3%(1)	0.0%(0)	75.0%(6)	63.6%(7)
	취업가능성이 없어서	33.3%(1)	0.0%(0)	25.0%(2)	27.3%(3)
	건강이 악화되서	33.3%(1)	0.0%(0)	0.0%(0)	9.1%(1)
	소 계	100.0%(3)	0.0%(0)	100.0%(8)	100.0%(11)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30.8%), 본인이 실직해서(30.8%)이며 만성

실업자의 경우만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실직해서(28.6%)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63.6%인 7명이 장애정도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해서(63.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구체적인 구직활동은 공공직업안정기관접촉(24.0%)과 사업체방문(24.0%)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나 친지접촉(20.0%), 장애우기관 방문(20.0%), 민간직업안내소(16.0%), 실직자 모임터(12.0%), 장애우체용박람회(12.0%), 신문 등의 구인광고(12.0%)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정신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단지 24.0-1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개인의 구직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주로 사용한 구직활동의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인 것(최고 50.0%까지 이용률이 있음. 다양한 기관에 이용률이 높음)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접촉으로 나타났다. IMF이전의 실직자들은 친구나 친지의 접촉, 사업체 방문, 신문 등의 구인광고를 주로 사용하였고 만성실업자들은 장애우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접촉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이고 시군구취업센터(16.0%), 노동부지방사무소(12.0%)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에 다양한 기관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다른 유형의 실직자들에 비하여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구직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9-17〉 실업정신지체장애인의 구직적인 구직활동 유형

구 分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직자 모임터	16.7%(1)	0.0%(0)	12.5%(2)	12.0%(3)
친구나 친지 접촉	33.3%(2)	66.7%(2)	6.3%(1)	20.0%(5)
소 계	50.0%(3)	33.3%(1)	12.5%(2)	24.0%(6)
노동부 인터넷사이트	0.0%(0)	33.3%(1)	0.0%(0)	4.0%(1)
노동부 지원사무소	33.3%(2)	0.0%(0)	6.3%(1)	12.0%(3)
인력은행	16.7%(1)	0.0%(0)	0.0%(0)	8.0%(2)
고용안정센터	33.3%(1)	0.0%(0)	0.0%(0)	16.0%(4)
사군구취업센터	33.3%(1)	0.0%(0)	12.5%(2)	20.0%(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3.3%(1)	66.7%(2)	6.3%(1)	20.0%(5)
민간직업안내소	16.7%(1)	33.3%(1)	12.5%(2)	16.0%(4)
사업체방문	33.3%(2)	66.7%(2)	12.5%(2)	24.0%(6)
장애인기관 방문	33.3%(2)	0.0%(0)	18.8%(3)	20.0%(5)
장애인체육방문회	33.3%(2)	0.0%(0)	6.3%(1)	12.0%(3)
신문 등의 구인광고	16.7%(1)	66.7%(2)	0.0%(0)	12.0%(3)

④ 구직 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

구직 활동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장애(64.3%)이고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21.4%)이다. 그러나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66.7%)에 집중되어 있어서 IMF형 실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당한 일거리의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18〉 실업정신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점

구 分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점	실직자 모임터	66.7%(2)	0.0%(0)	12.5%(2)
	화려·기능자리에 부적합	0.0%(0)	0.0%(0)	12.5%(1)
	장애	33.3%(1)	100.0%(2)	62.5%(1)
	작은 보수	0.0%(0)	0.0%(0)	12.5%(1)
전 체	100.0%(3)	100.0%(3)	100.0%(8)	100.0%(4)

⑤ 취업을 원하는 직종

가장 선호하는 회망직종은 단순노무직이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모두 단순노무(1 케이스). 아무거나(2케이스)로서 구직의 시급함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회망직종과 회망직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MF형 실직자들의 회망사항은 무응답을 제외한 모든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했으며 50-100만원의 보수수준을 원하고 있다.

〈표9-19〉 실업 정신지체장애인의 회망직종 및 업종

구 分	유형별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회망	임금근로자	50.0%(3)	66.7%(2)	12.5%(2)
근로	비임금근로자	0.0%(0)	33.3%(1)	0.0%(0)
형태	무응답	50.0%(3)	0.0%(0)	87.5%(14)
회망	정규직	50.0%(3)	66.7%(2)	12.5%(2)
종사	자영업자	0.0%(0)	33.3%(1)	0.0%(0)
형태	무응답	50.0%(3)	0.0%(0)	87.5%(14)
회망	관리행정직	0.0%(0)	33.3%(1)	0.0%(0)
직업	단순노동	33.3%(2)	0.0%(0)	6.3%(1)
	노점·좌판	0.0%(0)	33.3%(2)	0.0%(0)
	기능직	0.0%(0)	33.3%(2)	6.3%(1)
	모든 직종	16.7%(1)	0.0%(0)	0.0%(0)
	무응답	50.0%(3)	0.0%(0)	87.5%(14)
전 체	100.0%(6)	100.0%(3)	100.0%(16)	100.0%(25)

〈표9-20〉 실업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회망보수수준 범주

구 分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회망보수	50~100만원 미만	100.0%(3)	66.7%(2)	100.0%(2)
수준 범주	100~150만원 미만	0.0%(0)	33.3%(1)	0.0%(0)
전 체	100.0%(3)	100.0%(3)	100.0%(6)	100.0%(12)

5)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① 생활보호사업

실직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역시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44.0%나 되며,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78.6%인 11명이며 신청자들 중 72.7%인 8명이 수혜를 받았다.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한 이들은 일반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63.6%와 36.4%로 신청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은 지원액은 10-20만원의 경우가 62.5%로 가장 많고 30-40만원의 경우가 25.0%, 5-10만원이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73,625만원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IMF이전의 실직자와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범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IMF형 실직자들은 10만원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보호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응답한 경우는 단 4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지 몰라서(1경우),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2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1경우)로 절반 정도가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도 생활보호사업의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

며(4경우, 44.4%)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2경우, 22.2%)이 있고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운(2경우, 22.2%) 문제를 지녔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21〉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사용용도

구 분	실 직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비로 현금지원	50.0%(1)	100.0%(2)	80.0%(4)	77.8%(7)
외로비지원	50.0%(1)	50.0%(1)	100.0%(4)	75.0%(6)
교육비지원	50.0%(1)	50.0%(1)	25.0%(1)	37.5%(3)

〈표9-22〉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	50.0%(1)	0.0%(0)	0.0%(0)
사업 비수혜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	0.0%(0)	100.0%(1)	100.0%(1)
아유	기타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	50.0%(1)	0.0%(0)	0.0%(0)
	전 체	100.0%(2)	100.0%(1)	100.0%(4)

〈표9-23〉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지원금 부족으로 실직의 도움 안받	25.0%(1)	50.0%(1)	66.7%(2)
사업의 문제점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 너무 엄격	50.0%(1)	0.0%(0)	0.0%(0)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가 까다로움	0.0%(0)	50.0%(1)	33.3%(1)
	기타	25.0%(1)	0.0%(0)	0.0%(0)
	전 체	100.0%(4)	100.0%(2)	100.0%(3)
				100.0%(9)

② 공공근로사업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48.0%이며, 공공근로 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27.3%인 6명만이 신청하였고 신청자들 중 28.6%인 2명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71.4%나 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정신지체장애우에게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기 않은 이유는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어서(44.4%), 신청 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22.2%),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16.7%),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신청하기 않은 경우가 50%를 차지하여,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IMF형 실직자와 IMF이전의 실직자

의 경우에 한 케이스씩 있었으며 공공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를 만성실업자의 53.9%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자격이 안되어서이지만, IMF형 실직자들과 IMF이전의 실직자들의 비신청의 주된 이유는 적합한 일이 없어서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공공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직종개발이 주요하다고 하겠다.

〈표9-24〉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	0.0%(0)	0.0%(0)	23.1%(3)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돼	0.0%(0)	0.0%(0)	30.8%(4)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	0.0%(0)	33.3%(1)	7.7%(1)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100.0%(2)	66.7%(2)	30.8%(4)
	기타	0.0%(0)	0.0%(0)	7.7%(1)
	전 체	100.0%(2)	100.0%(3)	100.0%(13)
				100.0%(18)

③ 실업급여

〈표9-25〉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직업훈련내용

구 分	실 직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희망직업 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50.0%(1)	50.0%(1)	50.0%(2)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50.0%(1)	0.0%(0)	25.0%(1)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0.0%(0)	50.0%(1)	25.0%(1)
	전 체	100.0%(2)	100.0%(2)	100.0%(4)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하여 응답한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단지 5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중 신청하지 않은 1경우를 제외하고 4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이유는 모두(2경우)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이다. 응답자 7명 모두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대상자 7명중 5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검토해보면, 창업을 위한 훈련을 원하는 경우가 2경우,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은 1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훈련은 1경우로 나타났다.

④ 대부사업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들중에서 대부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조사응답자의 60.0%인 15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27.3%의 3명에 그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2경우)과 생업자금(1경우)으로 대부사업을 신청한 정신지체장애우는 3명, 모두 대출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주로 신용보증인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50.0%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이며 대부사업의 문제점을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을 지적한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대부사업은 정신지체장애우에게는 자격조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접근 불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신청한 대부사업의 내용이 생업자금이었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만성실업자들이었다. 또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낀 정신지체장애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IMF형 실직자들로 나타났다. 즉 IMF형 실직자들이 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9-26〉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대부사업의 문제점

구 분	유 형 별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대부 사업의 문제점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100.0%(4)	0.0%(0)	50.0%(1) 71.4%(5)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0.0%(0)	100.0%(1)	0.0%(0) 14.3%(1)
	대부 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0.0%(0)	0.0%(0)	50.0%(1) 14.3%(1)
전 체		100.0%(4)	100.0%(1)	100.0%(2) 100.0%(7)

6)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의 필요성은 84.2%, 구직활동비보조의 필요성은 84.2%, 긴급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83.4%, 긴급식품권 지원의 필요성은 70.5%, 타지역 구인정보제공의 필요성은 62.6%가 그 필요성을 동의하였다.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는 전체 실직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월의료보험료의 감면, 보건소의 무료(실비) 이용의 순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했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9-27〉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긴급의료비지원 필요정도

구 분	유 형 별		구직활동비 보조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타지역 구인정보 제공
	긴급 의료비 지원	기금식품권 지원			
긴급 의료비 필요 정도	매우필요	55.6%(10)	52.9%(9)	31.6%(6)	47.4%(9) 18.8%(3)
	필요	27.8%(5)	17.6%(3)	52.6%(10)	36.8%(7) 43.8%(7)
	보통	5.6%(1)	29.4%(5)	15.8%(3)	5.3%(1) 31.3%(5)
	불필요	5.6%(1)	0.0%(0)	0.0%(0)	1.5%(2) 6.3%(1)
	전혀 불필요	5.6%(1)	0.0%(0)	0.0%(0)	0.0%(0)
전 체		100.0%(18)	100.0%(17)	100.0%(19)	100.0%(19) 100.0%(16)

〈표9-28〉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구 분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한 것	월 의료보험료 50% 감면	25.0%(1)	0.0%(0)	27.3%(3)	22.2%(4)
	보건소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및 식비비용 확대	5.0%(1)	0.0%(0)	27.3%(3)	22.2%(4)
	긴급 의료비 지원	25.0%(1)	100.0%(3)	36.4%(4)	44.4%(8)
	보장구 구제제공 및 수리	25.0%(1)	0.0%(0)	0.0%(0)	5.6%(1)
	기타	0.0%(0)	0.0%(0)	9.1%(1)	5.6%(1)
전 체		100.0%(4)	100.0%(3)	100.0%(11)	100.0%(18)

7)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실업대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신지체장애우들은 고용유지대책에 28.6%와 생활안정대책에 71.4%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은 40.0%와 60.0%로 응답하여 고용유지정책에 대한 응답이 약간 더 늘었다.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85.7%, 6 경우)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이외에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38.9%)가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IMF 실직 장애우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생업자금융자와 생활보호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29〉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구 分	유형별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둬야	40.0%(2)	33.3%(1)	23.1%(3) 28.6%(6)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둬야	60.0%(3)	66.7%(2)	76.9%(10) 71.4%(15)
전 체		100.0%(5)	100.0%(3)	100.0%(13) 100.0%(21)

〈표9-30〉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안정대책중 중요사항

구 分	유형별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고용안정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50.0%(1)	0.0%(0)	0.0%(0) 14.3%(1)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50.0%(1)	100.0%(1)	100.0%(4) 85.7%(6)
	소 계	100.0%(2)	100.0%(1)	100.0%(4) 100.0%(7)
	공공근로사업	0.0%(0)	50.0%(1)	0.0%(0) 5.6%(1)
	생활보호 확대	50.0%(2)	0.0%(0)	41.7%(5) 38.9%(7)
생활안정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0.0%(0)	0.0%(0)	33.3%(4) 22.2%(4)
	장애인관련 서비스 확충	0.0%(0)	50.0%(1)	25.0%(3) 22.2%(4)
	생업자금 융자	50.0%(2)	0.0%(0)	0.0%(0) 11.1%(2)
	소 계	100.0%(4)	100.0%(2)	100.0%(12) 100.0%(18)

3. 정책적 대응 방안

1) 원칙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우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우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우 직업재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적성직종의 개발현황과 신기술 발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①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원칙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정상화는 장애우의 대규모 수용에 반대하며 장애우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통합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Wolfensberger, 1972; 김용득, 199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제한 개념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우의 욕구가 대변되어 있는 것이다.

정상화의 원칙은 자기옹호 운동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자기 옹호 운동은 “정신지체장애인가 대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흥미를 주장하는 노력”을 포함하며(Turnbull, Turnbull, Bronicki, Summers & Roeder-Gordon, 198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고용주장, 공정한 노동환경,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② 직업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 패러다임의 변화는 앞서 논의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계해서 이루어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상당히 최근까지 대부분의 직업재활 서비스들은 장애우가 직업에 배치되기 이전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선훈련-후배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델은 그러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특수학교나 장애우 직업훈련원 등 제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한 셋팅에서 학습된 행동을 다른 셋팅에서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선훈련-후배치’ 형태의 직업훈련은 주류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애우의 문제는 장애우의 기능과 능력부족에 기인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고착화시켰으며 수행결과가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

우의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서 등장한 것이 ‘선훈련-후훈련’ 모델이다. 이 모델은 많은 장애우들에게서 발견되는 장애의 차이를 인정하고 따라서 훈련이나 경쟁고용의 선결조건으로서 장애우에게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장애우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③ 적성직종의 개발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종의 개발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정신연령 및 IQ에 따라 수행능력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김승국과 이해명(1982)의 논의에 따르면 IQ 50-75인 정도 정신지체아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지만 의사 전달은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몸에 익혀서 반숙련, 미숙련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사회적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IQ 25-50정도인 중도 정신지체아는 일상생활은 반의존적이며 의사 전달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고 대인 접촉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주로 단순한 작업만이 가능하며, 그 중에도 직업훈련의 결과에 따라 취직할 수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IQ 25이하의 중도 정신지체아는 일상생활은 완전히 의존적이며, 의사 전달은 거의 불가능하며, 작업도 물론 불가능하여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종의 개발은 신체적인 요소, 정신적·심리적 요소(지능, 정서, 성격, 흥미 등) 및 환경적 요소(외적인 환경) 등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되고 파악되어야 (윤점룡, 박혜정, 1982)하며 직종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1)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을 것, (2) 단순하며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것, (3)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4) 안전도가 높은 것, (5) 기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6) 기계, 장치, 공구, 재료, 제품 등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 (7) 기계, 장치, 공구 등의 조정이 간단한 것, (8) 매우 기민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9) 장기간의 정신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10) 작업 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11) 계산 측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것, (12) 작업의 정밀도가 높지 않는 것, (13) 작업 공정이 세분화되어 가능한 한 단일 작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14) 영속성이 있는 것, (15) 지역 사회 산업과 연결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에 관하여 김승국(1982)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조사로 실시한 연구결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 표와 같다.

김승국은 474개 직종 중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을 단순직으로 청소원, 단순노무자, 건물외부청소원, 부두노동자, 벽돌공, 일반농업종사원, 어부, 숯굽기공 등 8개 직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인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적성직업을 포함하여 32종이라고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연구에서도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56가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김승국(1985)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직무들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에 관하여 박희찬(1995)은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131명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일하고 있는 취업직종을 조사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으로 제시하였다. 취업분야와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31〉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

직업 능력별		정신지체 장애우의 적성 직업
교육가능급		단순노무자, 청소원, 건물외부청소원, 부두노동자, 벽돌공, 일반 농업종사원, 어부, 숯굽기공, 세탁공, 우마부, 수위, 등대원, 타일부착공, 개인시중원, 도배공, 가정부, 전답작물 및 채소농업종사자, 벳시공, 미장공, 두부제조공, 호텔수위, 양초제조공, 선박화부, 목각공, 우산조립공, 등사공, 간장 및 된장제조공, 굴양식종사자, 제빵공 및 제과공, 목공, 파수원 및 유사 교육재배종사자, 광원 및 채석원 (총 31개 직업)
훈련가능급		단순노무자, 건물외부청소원, 등대원, 철근 콘크리트공, 소각장운영원, 차단기조작원, 일반농업종사원, 부두노동자, 전답작물 및 채소농업종사자, 가축사육종사자(가금제외), 벽돌공, 화물취급인, 청소원, 세탁공, 바구니제조자, 건물해체공, 원예종사자 및 정원사, 가금사육종사자, 낙농종사자, 파수원 및 유사교육재배종사자, 타일부착공, 보일러화부, 목각공, 숯굽기공, 목실종사원, 양봉종사자, 양잠종사자, 수위, 벌채원, 선박화부, 도배공, 미장공, 등사공, 목공, 일반농업경영자, 선박윤활유주입공, 우마부, 가정부, 제빵공 및 제과공, 연봉작공, 개인시중원, 나염공, 안내원, 구두수선공, 어부, 콘크리트공 (유정 및 개스천), 인조섬유제조공, 광물 및 석재처리공, 가죽제품 제조공, 시진암실종사자, 차, 커피 및 코코아제조공, 건물관리원 (총 52개 직업)

출처 : 김승국 (1982).

〈표9-32〉 정신지체 취업자의 취업분야와 직무내용

인원별, 직무별 종사분야별		인원수(비율)	직무 내용
기계전자조립	28(20.6)		카메라부품조립, 현미경 조립, 기계나 전자 부품조립, 단순조립
제조업 보조	80(58.8)		단순노동보조, 신발공장, 기계공장, 사슈공장, 완구 및 문구류공장, 목공소(가구업, 봉제공장, 반지/목걸이 만들기, 인쇄소/제책사에서 보조, 피혁제품 보조, 종이상자 제조, 물건나르기/옮기기, 포장, 식품회사에서 보조, 비닐봉투 제조, 자전거 조립, 안경테다듬기, 양말공장, 섬유(직물제조/염색), 프레스작동, 자동차 안전벨트 조립하기, 전기회사 전선배합)
용역/서비스/사무보조	13(9.6)		사무실보조, 음료배달차보조, 식당보조, 판매보조 및 물건정리, 신문배달, 제빵, 학교버스 보조
농업	2 (1.4)		파수원일, 농장일
보호작업장	13(9.6)		제조업, 농업

출처 : 박희찬(1995).

136명 대부분은 직업분류 사전의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표에서는 정신지체장애우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들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한 사례들이므로 5개 영역의 36가지의 일들을 적성직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우 취업 희망직종에 대한 직업별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직업 사전의 대분류 9번에 속하는 단순노무직을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 직업군으로 보고 있다. 단순노무직이라 함은 수공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대부분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가판, 청소, 수위 및 재산경비, 광업 농업 및 어업,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서 육체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들로 정의하고 있다.

권병화(1996)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가) 사무 관련 직업 교육 - 간단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직업, 사무자료 처리 및 절차, 사무관련 각종 기계제작, 속기 또는 사무직, 재료, 공급, 업무 감독 및 행정 관리 등이 포함된다.

나) 배달 관련 직업 교육 -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매매하는 직업교육이며, 여기에는 소매, 도매, 저장, 자금 조달 또는 음식점이나 호텔 작업이 포함된다.

다) 건강 관련 직업 교육 - 치과치료보조, 의학실험실 작업, 간호직, 재활관련 업무, X-광선 및 보건 위생관계 업무 등의 교육이 여기 속한다.

라) 가정 관리 직업 교육 - 식사 및 영양관계 업무, 가정부 업무, 의복 및 식사관리, 조리와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이 해당된다.

마) 산업 및 생산 업무 관련 직업 교육 - 도구 수리, 자동차 서비스, 기계청소 및 보호, 건축관련 업무(목공, 전기 벽돌 용접, 수도 파이프 조립 등), 냉동 또는 전자관계 업무 등의 교육을 말한다.

바) 농업 관련 직업 교육 - 농사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의 기능 개발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보급 서비스와 조직, 기타 원예에 관련되는 직무들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우 적성직업은 우리 나라보다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넓다. Kirk(1983)는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직업재활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면 반숙련이나 비숙련 직업에서 80% 이상 자립할 수 있다고 했으며, Louttit(1936)는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단순 반복적인 일에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잘 적응한다고 하였으며 아래의 〈표 9-33〉에서와 같이 정신연령 5세에서 10세까지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9-33〉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

정신연령	남자	여자
5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끈으로 그물 만들기, 의류분류, 수하물의 운반, 마구간 손질하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기, 석탄의 정리, 뜰의 손질, 식탁 닦기, 센드웨이퍼로 연마작업, 세탁기 조작	가정안의 일, 간단한 재봉, 세탁기 조작, 종이상자 만들기, 용단짜기
6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세탁일반, 농장일, 일상의 집안일, 잔디깎기, 세멘트 만들기, 기와 벽돌 만드는 일의 보조, 일반적인 ? 부엌이나 회사의 집 일	수동식 다리미질, 의류의 정리, 편물, 손뜨개질, 샘플을 보고 갈개뜨기, 간단한 세탁, 소형
7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페인트 칠하기, 걸레만들기, 분무기로 페인트 칠하기, 자동차 청소, 트럭조수, 등이자 만들기, 간단한 목공일, 팽이로 경작하는 일	손바느질, 재봉틀 바느질, 연초의 단무기, 소시지 상자에 넣기, 식초병에 넣기, 담배를 기계에 넣기
8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대장간의 조수, 페인트가게의 조수, 보일러판의 소제, 행상인, 빵집의 조수, 매트의 수선, 유리끼우기, 목재 완구의 제작, 건초쌓기, 미싱, 목장을 들보는 일	깔개짜기, 정원가구기, 등시인쇄, 인형옷 만들기, 재단된 천으로 옷만들기, 정도가 높은 집안일, 자동차의 라이트 검사, 도장
9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구두수리, 인쇄기조작, 가구수리, 완구의 페인트 칠하기, 곡식 걷어 들어기, 영사기의 조작, 셔츠 만들기	장갑만들기, 도기만들기, 천의 재단, 직기에 실걸기, 단추달기, 전선의 심만들기, 프레스조작, 스타킹 헝겊에 솜ungle 바느질하여 완구만들기
10세 정도가 할 수 있는일	우편배달, 인쇄, 간판걸기, 전기상 조수, 증기판 맞추기 조수, 신나 및 웍스바르기, 톤니비퀴 재단기 조작, 보일러 제작의 견습, 짐의 발송	세탁작기 조작, 스티킹작기조작, 상점의 점원

Fadely(1987)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우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을 위해 시도되는 직종은 관리인, 음식 서비스 근로자, 식료품점 점원, 식당의 웨이터 조수, 세탁소 근로자, 교사의 조수, 건설근로자, 자동차 차체 근로자, 우편 직원, 기계작동자, 주유소 주유원, 학교버스 조수, 창문 닦이, 호텔 잡역부, 상점 재고 관리원, 수의사 조수, 자료 입력원, 공장 라인근로자, 아동보호보조자, 서류 정리원 등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직종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즉,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직종들은 노동집약적이며,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쉽게 단순화되며, 직원이직이 빈번히 나타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장애우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고, 초보적인 기술을 가진 작업자에게 가능하며 현재 숫자로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오길승, 1999).

④ 첨단기술의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적용 가능성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 첨단정보사회, 고도산업사회, 탈구조화사회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과 지식관련 변화는 장애우의 손상을 보완해줄 수 있는 첨단 보조기기 및 장비, 시스템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첨단기술의 변화가 장애우 복지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첫째는 보조기기의 발전, 둘째는 자동화의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그리고 셋째는 첨단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의 직업훈련과정에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센서 및 보조적 재활기기의 발전은 사실상 정신지체장애우의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일상생활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훈련, 재활시키기 위한 기구나 장비의 개발이 재활공학에 달려있다. '휴먼좌변기'와 같은 보조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센서 장비의 개발에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이닦는 것 등 정신지체장애우의 신변자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는 자동화 및 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점차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자동화되어갈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화 가전기기 및 산업 자동화의 발전은 점점 더 육체적 노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는 육체노동을 많이 필요로 했던 제조업에서의 인력이 감소되고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의 필요 인력이 증대되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고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직종을 검토하면, 호텔 및 식당 여종업원, 여관 청소원, 슈퍼마켓 종사자, 자동차 서비스업이 적절한 직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직종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가 보다 유연하여져서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첨단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의 직업훈련과정에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우 각각의 욕구와 적성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배치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의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배치된 상황에 곧 용이하게 적용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새로이 도약할 밀레니엄 시대에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손상된 기능을 복구해줄 수 있는 재활공학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2) 방침

- 가. 정신지체 장애우의 손상으로 인한 활동상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공학이나 지원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나. 직종의 선택은 정신지체 장애우의 개인적인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획일적이며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은 배제되어야 한다.
- 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적 지원의 방향은 각기 다양한 선호에 의한 선택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 라. 궁극적으로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일반노동시장에의 경쟁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 마. 따라서 보호고용보다는 지원고용과 전환교육과 같이 경쟁고용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바. 지원고용과 보호고용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보호고용의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현황

①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 고용보조금 지급(96.1.1. 시행)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체가 정신지체 장애우를 새로이 고용하였을 경우, 1년차(계속근로일수가 만 12개월 이상)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80%, 2년차(계속근로일수가 만 24개월 이상)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60%를 각각 보조금으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나. 특별비용 지원(97. 3. 8시행)

"장애인고용관련 특별비용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정신지체 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신지체장애우의 작업지도를 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할 경우 정신지체인 5명당 1명의 작업지도원에 대해 정부가 월 50만원의 수당을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다. 직업체활시설지원규정(97.7.7시행)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준비훈련과 이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장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직업준비

훈련대상자에게는 훈련준비금, 교통비, 식비, 자격취득수당을 지급하며 훈련실시기간에는 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1년 이상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업장이 훈련실시자를 위하여 새로이 설비투자지원, 기술지도원 파견 및 현장준비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연계고용제(96. 1. 1. 시행)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 등 중증장애인에 보호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사업체가 하청을 주어 장애우부담금을 감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고용 프로그램

가. 보호고용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우를 위한 유일한 고용모델인 근로시설을 포함한 보호작업장은 그 시설의 수용범위나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의 문제, 재정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호고용이란 경쟁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 직업을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적응력이 떨어져서 원만한 직장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하게 보호된 작업시설에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이란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하는 비영리재활시설로 규정하는데(Nelson, 1971).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에서 간헐적이고 자생적인 형태의 보호작업장이 시설에서 실시되었지만 보호작업장이라는 형식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아마도 1979년 삼육아동재활원(현 삼육재활센터)이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우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총 148개 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우는 2,712명인데 이중에 정신지체장애우가 1,390명으로 전체의 51.2%를 점유하고 있다. 98년 1.1 현재 근로시설 8개, 보호작업장 137개인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운영 면이나, 제도적 측면, 재활서비스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운영과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면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대한 기준 미비와 유형별 운영기준의 미비, 통합고용의 전이프로그램의 부재, 직업재활시설과 근로인원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 미흡,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체계부족,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요원 및 전문요원과 연계체계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나. 지원고용 및 전환고용

지원고용은 장애와 상관없이 인간의 가져야 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 장애우에 대한 편견의 극복,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교수기술의 향상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지원고용은

정신지체장애우 취업에 있어서 중증 정신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환경에서 유급의 노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지원고용의 기본사상은 1981년 UN이 세계장애인의 해에 채택한 완전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s)에서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원고용의 개념, 원리, 절차에는 정신지체 직업교육 폐려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새로운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의 지원고용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상이나 방법론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원고용모델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어떤 지역과 기관을 선정하여 실험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교육통계연감에 의하면, 1998학년도 고등부 졸업자는 1,627이며 이 가운데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진학자가 26.4%이며, 무직자는 55.4% 전후이고, 취업자는 18.2%이다.

〈표9-34〉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무직자수
계	1,627(100)	375(23.0)	533(32.8)	719(44.2)
시각장애	185(100)	37(20.0)	137(74.1)	11(5.9)
청각장애	258(100)	29(11.2)	175(67.8)	54(20.9)
정신장애	931(100)	246(26.4)	169(18.2)	516(55.4)
지체장애	253(100)	63(24.9)	52(20.5)	138(54.5)

전환교육을 지향함에 있어서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직업교육 담당자 자격의 문제점이다. 1989년 제5차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배당은 학교 및 교사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색이고 중학부의 작업과 고등부의 직업준비활동을 강화한 점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김승국 1996). 그러나 전국 정신지체학교 34개 직업담당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56.4%, 실과와 일반자격증소지교사는 15.4%, 실과와 특수교사 자격증소유자는 12.8%이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당한 자격증 소지자는 실과와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인데 이들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직업교육에 많은 문제점(김영중 1991)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최종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등부의 '직업' 교과와 고등부의 '직업' 교과에 비중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교육 내용의 문제점이다. 정신지체학교의 직업교육이 직업 적성과 흥미가 직업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간과한 체 시행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졸업한 후 직업을 갖고 사회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다(김은영 1996).

4)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안

첫째, 정신지체장애우도 고용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에 보호고용보다는 경쟁고용에서 흡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작업장보다는 지원고용의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고용이라 함은 고용의 한 형태로서, 임금이나 감독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원과 같이 정신지체장애우가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서 정신지체장애우를 포함한 3인이 한 개조가 되어, 팀웍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팀 성원 중 최소 1인이 해당 정신지체장애우를 현장에서 감독, 지원하고 혹시 발생하게 될 부족한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의 고용을 의미한다.

둘째,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훈련의 형태는 '선배치-후훈련'의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특성상 한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환경으로 적용 혹은 응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직업훈련의 형태는 '선배치-후훈련'의 과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특수학교의 전공과 교육이 전환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전환교육(transition)은 개개학생의 요구와 결과중심의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과 교육, 성인생활을 위한 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등 학교에서 사회로의 적절한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박희찬, 1999). 즉,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전공과의 내용은 정신지체장애우가 졸업과 동시에 다가올 성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 가능한 직종의 선택은 정신지체장애우의 희망사항과 적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선형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우가 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장은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직종의 부여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 선호와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호작업장은 비장애인들과의 분리를 초래하므로 보호작업장내에서 정신지체장애우 고용을 수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지원고용과 같은 사회 통합적인 고용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보호작업장의 대상자는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정신지체장애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호작업장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그의 선호도나 장애 및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라, 경쟁고용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 자활사업장에서 일하게 될 사람, 생산성이 거의 없어서 노동기회의 제공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일곱째, 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숫자으로 최소화되어 노동의 경쟁력이 없는 정신지체장

애우를 대상으로 한 보호고용을 위해서는 지정발주제가 실시됨으로써 생산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덟째,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재활시설이나 복지관의 부설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관리체계나 수익의 목적의 유용, 근로장애인의 역할 불분명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이 재활시설이나 복지관등에서 설치하였더라도 운영은 독립해서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정신지체장애우 및 그 가족의 자구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사업에 대한 정신지체장애우 및 그 가족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부사업이 정신지체장애우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의한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사업체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대부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정 큰 원인이 담보의 조건을 최소화 혹은 없애고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등의 방안을 구축함으로서 대부사업을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 4 부 실업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언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우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임은 당연하다. 특히 장애우가 일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제 10 장 실업장애우정책의 기본 방향

장애우 실업문제는 일반 노동시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망실업률이 높고, 만성 실업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장애종별, 정도에 따라 경우가 매우 다르고, 장애를 입은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장애가 중증일수록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우 직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매우 복잡하고, 상이한 욕구를 무시한 단순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노동부가 실시해 왔던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고용 지원정책이 그렇고,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지원책이 시설지원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20세기 근력을 쓰는 산업구조에서 사람의 감수성과 지적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이 이십일세기 초반을 장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러한 조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장애우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집중 현상이 IMF이전보다 상위 20%에 더욱 더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테서 알 수 있다. 국가 기능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 장애우 직업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가 기능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장애우 직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세워져야 한다.

첫째, 장애우 직업정책에 있어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가)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장고법에 의해 국가는 의무고용에 있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 조항에 의해 의무고용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장재법은 국가도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범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로서의 솔선수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지금까지 적용제외율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고 있어 대상 공무원에 70% 가까운 수는 의무고용률에서 제외되고 있어 앞으로 이 법 시행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적용제외를 재조정이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장애인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여 장애우 고용의 책임을 솔선수범하여 행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나. 국가 책임주의적 고용형태를 강화하여 고용의 통합주의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새로 제정된 장제법 상의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장애우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와 전문인력에 의한 취업알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장애우 직업욕구에 따른 실태조사 및 산업체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직업훈련 직종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와 계약하여 훈련직종을 계약하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종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 기업이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가능하면 장애우 고용과 관련된 강제법규의 활용보다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장애우 고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노동격차 비용 및 관리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직업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해야 한다.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한해 쓰여지는 예산이 6·7백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일반회계지원은 겨우 15억원에 불과한 설정이다. 새로 제정된 장제법이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장애우를 위한 각종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예산의 수반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명목적인 조항에 불과하게 될 것임으로 일반회계상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우 고용촉진 비용을 기업의 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장애우 고용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

바. 장애우의 직업재활은 사회·의료·교육재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정책의 연계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는 장애우 직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놓고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아직도 혼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기업의 속성을 냉철히 고찰하고 장애우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의 명목론과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리론 사이의 기본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선택적으로 고용하는 속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 고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 속성에 입각하여, 명목에 맞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장애우고용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우 취업확대를 위한 일선 서비스 창구로서 인식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은 취업알선에 역할이 중심축이 놓여져 있다면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전체 산업구조에서의 장애우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단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퇴직처가 되고 있는 등의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연구와 정책연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현상이 시정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실적인 규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300인 이상이다. 그렇지만 장제법 대상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되어 많은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 기업의 장애우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동기를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장애우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세제혜택과 대폭적인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의광고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기업내의 장애우 직업영역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 독자적인 제도나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우의 적성에 맞는 직무영역의 개발을 검토하고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라.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의 문제와 정신지체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지체인과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생산현장에서는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잣은 이직, 중도포기 등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수화통역 및 상담 지능 정도에 맞는 직종배려, 인간적인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애우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조직화를 통한 일할권리 찾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우의 고용확대는 장애우가 주체가 되어 생존권 및 노동권 확보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권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가. 장애우는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취업활동능력의 배양을 위한 공식, 비공식 교육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장애우 고용의 저해요소들을 장애우 입장에서 냉정히 볼 수 있는 비판능력을 기른다.

나. 민간단체와 공공부분과 선의의 경쟁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유일한 장애우 직업정책실시 주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장애우 직업정책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상황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민간분야의 장애우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장애우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는 장애우 수와 장애우 고용실태, 장애우 고용에 관한 욕구조사 및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의 장애우 직업상담기법, 직업능력 평가체계의 연구개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고학력 장애우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 구직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 고용을 저해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 직업생활을 효과적으로 돋는 여러 가지 기기의 개발, 통근이나 이동수단의 확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의 활용, 주거, 상담원체계의 확립, 문화, 오락공간의 확보 등 고용을 강화시키는 주변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넷째, 장애우 직업정책을 세울에 있어 언제나 장애우 중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장애우 직업정책은 다분히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있어 분명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정책만 있고 이용자가 없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는 물론 모든 장애우 직업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차별금지, 사회통합,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고, 가까운 지역내에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을 갖기 위한 정보보급, 상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직업생활의 접근이 용이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장애인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서 직업재활과정을 신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의해 전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형평성 이념에 근거한 복지국가로서 사회에서 불이익한 입장에 처해있는 자들에게 정책적 혜택을 베푸는 것은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함은 물론 장애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선택성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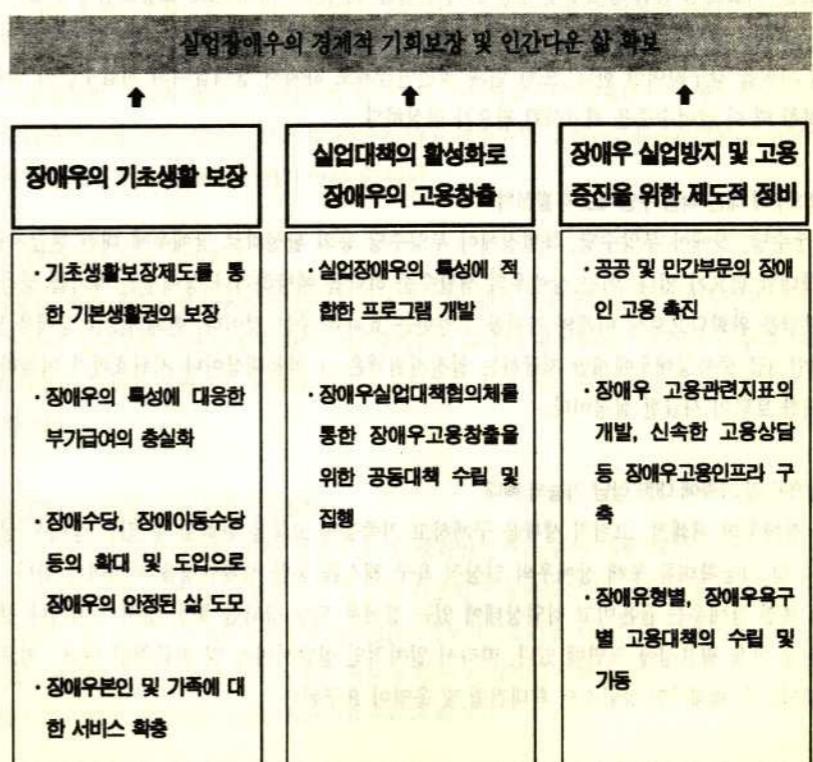
이에 따라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우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임은 당연하다. 특히 장애우가 일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장애우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장기계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장애우 인구를 감안하여 장애우에 대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조사된 실업장애인 욕구조사와 장애우 실업대책을 위한 제언이 앞으로 바뀐 장제법 시행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 11 장 실업장애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1. 실업장애인정책의 기본틀

실업장애인 정책은 장애우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및 경제적 기회의 보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우 및 열악한 임금조건에 있는 장애우,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우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우에게 적극적인 장애우실업대책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다른 한편 이미 고용상태에 있는 장애우에게는 실업방지 및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책의 기본틀이 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실업장애인 정책의 기본틀



2. 실업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1) 장애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① 2000년 10월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햄화

공공부조정책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산출 및 급여산정 시 장애우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생활보호제도가 매우 경직적인 대상자 선정과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지원시의 저급한 급여수준 및 장애우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정부 지원의 주요한 기준이 될 최저생계비 산출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은 물론 가구원구성상의 특성을 따질 때 장애우 유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표본가구의 구성을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애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수준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충실햄화

장애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으로 꼽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충실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보험 상의 장애우에 대한 급여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고용보험상에 있어서 장애우의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장애우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있어서의 추가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장애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급여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③ 장애우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의 활성화

장애인수당, 장애아 부양수당, 특별장애인 부양수당 등의 활성화로 장애우에 대한 현금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우의 생활수준 하락을 예방하거나 장애우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고양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현재 1.2급 장애우 및 정신지체인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일정지원액은 그 적용대상이나 지원효과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④ 장애우 및 기족에 대한 상담 기능의 확대

제가 장애우의 폐쇄적, 고립적 생활을 구제하고 기족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장애우 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확대를 통해 장애우의 일상적 욕구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을 꾀하여야 한다. 사업상태에 빠진 장애우는 물론이고 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우 모두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나 생활상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상담서비스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기능이 발휘되도록 체계적인 상담소의 확대건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2) 실업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의 전개

①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의 일정 유지 및 장애우 직종의 적극 개발

기초생활권의 보장 및 '일을 통한 복지'의 이념과 조옹시켜 볼 때 실직장애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의 시행과 함께 이 문제가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의 장애우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적인 안배 수준, 그리고 장애우계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좀더 파격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기존의 미약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내에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근로기회가 실업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자신감과 근로능력의 배양을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업장애인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의 다양화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장애우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장애우 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우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공적인 직업알선센터인 고용안정센터에서 장애우를 위한 고용정보의 관리와 취급이 미약하며 이나마도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장애우관련시설과 연계되지 않으므로써 오는 정보의 차단 및 분산을 막고 종합적인 장애우고용관련정보의 취합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③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 확대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훈련참가 장애우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통하여 장애우의 노동능력이 배양되며 신기술의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애우의 창업이 적극 유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들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④ 실업장애인에 대한 대부사업의 현실화

저소득계층과 실업장애인을 위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대부조건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데 대한 개선 및 행정절차의 개선의 시급하며 응자대상 및 규모의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저소득층위주로 되어있는 대부자격조건을 완화하여 현재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사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하여 자립적인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부자격을 확대하는 것도 아울러 요구된다 하겠다.

⑤ 장애우실업대책협의회(가칭)의 구성에 따른 장애우실업대책의 종합적인 점검

정부 및 민간의 장애우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 및 그 효과성을 측정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협의회 발족이 요구된다.

이 협의회는 장애우에 관한 실업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장애우 입장에서의 점검기관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장애우의 욕구수렴기관의 성격을 겸하는 것으로 장애우 실업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절실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우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 확립

① 공공부문의 장애우 고용 의무화 준수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우 고용률을 높여야 하며, 장애우 고용이 전무한 공공 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2000년부터 5%로 확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그 실행의지와 실제 실현 가능성성이 의심받고 있는 처지에서 강제적인 준수사항으로 못박을 필요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② 민간부문의 장애우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민간기업의 장애우 고용비율 중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우 고용의 관건은 민간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이를 기업에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고용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무고용비율제도를 선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장애우 채용계획과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③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해고 방지

구조조정기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장애우, 특히 여성장애인 who 우선해고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며 노동부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좀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장애 우 실업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발

장애우의 등록율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장애우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우 고용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통계 작성 및 대책마련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그 추이를 주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근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장애우 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관련 상담

현재 장애우의 고용전문상담소가 없는 점을 생각할 때 이를 전문상담기관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장애우 본인 및 가족의 사회심리적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장애우의 종합적인 고충처리센터로 기능하게 만든다. 또한 이를 위한 장애전담상담사나 치료요원을 육성하여 배치하도록 하

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⑥ 개별목구별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

현재 장애우의 특성별 고용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과감한 비용투여로 이 부분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일선 장애우 고용관련 상담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우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점을 인식.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위영·안병준·우재현(1984).『장애인의 직업재활』. 서울: 형설출판사.
곽준기, 박희찬(1995).『정신지체고등부 졸업생의 전환과정 결과 추적조사 연구』. 서울: 한국재활재단.
강위영, 정대영(1994).『발달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김병하(1991).『장애인 고용촉진정책과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청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권병화(1996).『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실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국과 김우기(1985).『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승국과 이해명(1982).『장애인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승국(1995).『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 행동평정척 표준화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집 국립특수교육원.
김승국(1996).『특수교육과정의 변천』. 『한국장애인복지연천사』. 한국재활재단.
김용득 유동철 외(1999).『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은영(1996).『정신지체인의 직업흥미와 취업직종』.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중(1991).『정신지체학교 직업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나영선(1999).『일반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장애인고용』, 1999 여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옥희(1999).『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희찬(1999).『특수학교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고용』, 1999 여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희찬(1995).『지원고용의 관점에서 본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방향』. 『특수교육논총』, 제12집, 한국특수교육학회.
박희찬(1999).『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삼육재활센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1998).『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1).『장애인복지연감』.
엄승연(1998).『뇌성마비 장애인의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오세철(1997).『근디스트로피인의 재활 지원 고찰』.
오길승(1999).『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삼육재활센터.

- 이나미·윤정원(1991).『특수학교 직업교육 효율화 방안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이철자(1998).『정신지체인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과 직업활성화 방안』. 한국재활재단.
- 엄승연(1998).『정신지체인 직업적응 프로그램개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계준(1999).『시각장애인의 취업실태 및 고용활성화 방안』. 제4회 WBU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정기총회 발표 논문.
- 이계준(1999).『시각장애인 직업생활의 장·단기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선우(1997).『장애인의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장애인고용』, 25호.
- 이유숙(1994).『청각장애 훈련생의 컴퓨터 기능훈련』. 국립재활원.
- 임재희(1998).『청각장애특수학교의 직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용호(1997).『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정광희(1997).『97 청각장애학교 졸업생 진로현황 조사』.『청음』, 97년 7/8호.
- 정기원 외(1997).『장애인 취업실태 및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철외(1997).『잔디네』. 서울: 균육디스트로피장애인협회지, 제50호.
- 장창업(1999).『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프로그램개발을 중심으로. 삼육재활센터.
- 조인수·장병연(1995).『발달장애아 직업전 훈련 프로그램』.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승욱(1994).『정신지체학교 직업지도교사의 진로교육 인식과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현숙(1992).『장애인직업훈련실태조사 및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8).『장애인고용동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년).『장애인 고용동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정신지체인의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연구』.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1997).『청각장애인 직업제활사업 보고서』.
- 한경애(1997).『정신지체아 중등과정의 진로교육 실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Brown, L. et al. (1983). "The critical need for nonschool instruction in educational programs for severe handicapped students", JASH, vol.8.
- Meyer, L.H., Peck, C.A. & Brown, L. (1991). *Critical issu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 Meyen, E. L. & Skrtic, T. M. (1995). *Special Education*. Love Publishing Company.
- Wehman, P., McLaughlin, P. J. (1980). *Vocational Curriculum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Texas, Pro-ed.
-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Downsview, Toronto, Canada: York University Campus,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 Kazuo Tsuchiya(1985), "Some Problems in Philosophical Rehabilitation Engineering", JJMEBE , Vol.23, No.4, pp.223-232.
- Schaeffer, C. H. & Briesmeister, J. M. (1989). *Handbook of parent training*.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부록】

실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금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실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리 다양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실직자' 대책은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이에 맞는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파악돼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직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실직장애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이 다소 길어 바쁘신 선생님께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바로 장애인의 실업대책과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중요한 바탕이 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의있게 응답하시고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시어 가능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 3

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정신지체인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팩스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 (02) 521-5364 팩스 : (02) 584-7701

1. 응답자 일반사항 :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의 특성은?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촌, 어촌, 산촌

4. 귀하의 학력은(재학중이거나 중퇴 포함)?

- ① 다니지 않았음 ② 초등학교 ③ 특수학교 초등부
 ④ 중학교 ⑤ 특수학교 중등부 ⑥ 고등학교
 ⑦ 특수학교 고등부 ⑧ 전문대 ⑨ 대학교이상

5.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은?

- ① 자체장애 급 ② 정각·언어장애 급
 ③ 시각장애 급 ④ 정신지체 급

6.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7. 귀댁의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총_명)

- 7-1.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댁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포함) 몇 분입니까?

- ① 예 (명) ② 아니오

9. 귀하의 주택소유 형태는?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영구임대 ⑤ 기타()

2. 실직전 사항 : 직업을 가진 경험이 없는 분은 23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는 언제 직업을 일으셨습니까?

년 월

12. 귀하는 임금근로자(월급을 받는)이셨습니까?

- ① 예 (12-1로) ② 아니오(12-2로)

12-1. 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12-2.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④ 자영업자/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13.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가 및 기술자 ② 사무직 ③ 서비스 및 판매직
 ④ 농업 및 어업직 ⑤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⑥ 단순노무직
 ⑦ 노점, 좌판 ⑧ 관리행정직 ⑨ 기타()

14. 귀하가 일했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서비스업 ② 제조업 ③ 농림어업 및 임업
 ④ 기타()

15. 직장(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5인 미만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인 이상

16.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월 평균 만원

17. 귀하의 실직전 직장(자영업 포함)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18. 귀하가 일금근로자인 경우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법정 퇴직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받은 퇴직금 () 원 ② 받지 못한 퇴직금() 원
 ③ 퇴직금이 없음 ④ 해당 없음

19. 직장을 그만두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때문에 ② 해고(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19-1번 문항으로)
 ③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④ 일거리가 없음 ⑤ 근무시간 환경이 나빠서
 ⑥ 기타 ()

19-1. 귀하의 장애가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20. 실직후 귀하의 생활에 변화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0-1. 건강이 악화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2. 장애정도가 더 심해졌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3.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실직 후 귀댁의 가족생활 중 다음 항목들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1-1.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2. 부채(빚)가 증가하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3. 부부,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4. 학업 과외중단 등 자녀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귀하 가구의 가족 중 실직 이후 질병을 앓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실직후 경제사항

23. 귀댁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V)하여 주십시오.

- ① 본인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② 다른 가구원이 일하여 얻는 근로소득으로
 ③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④ 그 동안의 저축으로
 ⑤ 따로 사는 친척, 친지의 지원 ⑥ 종교단체 및 사회기관의 도움으로

- ⑦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 ⑧ 실업급여
- ⑨ 빚을 얹어서
- ⑩ 이웃의 도움
- ⑪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보조금으로
- ⑫ 정부의 대부사업(생활안정자금 등)
- ⑬ 공공근로사업
- ⑭ 직업훈련수당
- ⑮ 기타()

23-1. 이중 가장 주된 생계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하나만 답해주세요)

24. 귀하의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
(생계보조비, 공공근로, 결연사업, 건물세등 모든 소득을 포함)
- ① 전혀없음
 - ② 10만원 미만
 - ③ 10~30만원 미만
 - ④ 30~50만원 미만
 - ⑤ 50~70만원 미만
 - ⑥ 70~90만원 미만
 - ⑦ 90만원 이상

25.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 ② 30만원~50만원 미만
 -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150만원 미만
 - ⑤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⑥ 200만원 이상 미만

26. 실직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 월() 만원 정도

5. 실직후 구직사항

27. 귀댁이 한달동안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 만원 정도

28. 귀하는 일자리를 찾기 원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28-1로)

28-1.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34번 문항으로)

- 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 ②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 ③ 건강이 악화돼서
- ④ 기타

29. 귀하께서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 ① 본인이 실직해서
-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③ 소비지출이 늘어나서(자녀진학, 의료비 등)
- ④ 빚 때문에
- ⑤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⑥ 기타()

30. 일자리(일거리)를 찾으려고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모두 표시)

- ① 실직자 모임터 방문 등
- ② 친구나 친지와 접촉하였다
- ③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접촉하였다(30-1번 문항으로)
- ④ 민간직업안내소(취업상담소)와 접촉하였다
- ⑤ 일자리가 있는지 사업체를 찾아다니거나 연락하였다
- ⑥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가보았다
- ⑦ 장애인 채용박람회나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가 보았다
- ⑧ 신문, PC통신(천리안,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보거나 연락하였다
- ⑨ 기타()

30-1. 공공기관에 알아본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모두 표시)

- ①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 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지방청 포함)
- ③ 인력은행
- ④ 고용안정센터
- ⑤ 시 군 구 취업센터(읍 면 동 포함)
- ⑥ 산업인력관리공단
- ⑦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⑧ 기타()

31. 일거리나 직장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 (), (), ()
- ①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②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③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 ④ 장애때문에
 - ⑤ 제시된 사업 또는 수입(보수)이 적다
 - ⑥ 작업환경이나 작업시간이 맞지 않다
 - ⑦ 나이가 너무 많다
 - ⑧ 여성이라는 성차별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⑨ 기타()

32.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33. 새로운 직장(일자리)에서 수입은 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월() 만원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귀하는 생활보호사업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8번 문항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란 최근 대량실업,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급격한 소득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노숙자세대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생계유지가 가능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함."

35. 귀댁에서는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3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6번 문항으로

35-1. 신청하셨다면 어느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 ① 일반생활보호사업 ②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35-2. 신청후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35-3, 35-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9번으로 가시오

35-3. 어떤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생활비로 현금지원을 받음 ()
(2) 의료비 지원(의료보험료 면제 포함) ()
(3) 교육비 지원(학비 면제 포함) ()
(4) 기타 ()

35-4. 지원을 받는 액수는 모두 합하여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 수급액 : (만 천원)

36.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②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③ 소득기준액(월23만원)을 초과해서 ④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⑤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⑥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⑦ 자존심 때문에 ⑧ 기타()

37. 생활보호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③ 신청 및 수급하는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④ 기타()

* 다음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8.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39.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 ① 예 → 4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41번 문항으로

40. 신청하셨다면,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까?

- ① 예 → 40-1번 문항으로

②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③ 일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였다

40-1.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가장 최근을 기준)

()()()

41. 귀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표시)

- ①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②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③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④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⑥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⑦ 기타()

* 다음은 고용보험(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자는 43번 문항으로)

42.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의 직장을 그만 두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받을 예정도 포함)
 ②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③ 퇴직한 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④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2-1번 문항으로)

⑤ 신청하지 않았다 (42-1번 문항으로)

42-1. 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 ②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 ③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자격이 안되어(자발적 이직, 정계하고, 가입기간 부족 등)
- ④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서
- 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 ⑥ 곧 취직이 될 것 같아
- ⑦ 기타()

43. 귀하께서는 실직 이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43-1로)
- ② 현재 받고 있다 (43-1로)
- ③ 받은 적이 없다 → 44번 문항으로

43-1. 공공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으셨습니까?

- ① 실업자 재취직 훈련 ② 고용촉진 훈련 ③ 대학 등 직업훈련
- ④ 기능사 양성훈련 ⑤ 영농 회망자 훈련 ⑥ 농어민고용 촉진 훈련
- ⑦ (실직자) 창업훈련 ⑧ 복지관, 장애인단체등에서 제공하는 훈련
- ⑨ 기타()

44. 정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 ① 그렇다 → (44-1번 문항으로)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44-1. 어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①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 ② 자영업자의 사업능력 향상 훈련(예, 미용기술, 회계 등)
- ③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
- ⑤ 컴퓨터 관련교육
- ⑥ 기타()

* 다음은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부(대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대부(대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47번 문항으로

45-1. 알고 계시다면 그 대부(대출)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45-2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45-5번 문항으로

45-2. 어떤 종류의 대부(대출)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두가지 이상 경우 신청금액이 큰 것)

- ①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 ② 주택자금(전세금 융자 포함)
- ③ 생업자금
- ④ 관리 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지원(벤처기업 지원 포함)
- ⑤ 귀농자 정착지원

45-3. 신청하였다면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총() 만원
- ② 아니오 (45-4번 문항으로)

45-4.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① 담보가 없어서
- ②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 ③ 주택전용면적 초과
- ④ 재산세 과세액 초과
- ⑤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 ⑥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 ⑦ 세대주가 아니라서
- ⑧ 구직등록 후 3개월 혹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45-5. 대출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 ②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 ③ 자격요건이 안 되어(세대주자격, 주택/재산 등 요건)
- ④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신용보증인 제도 등)
- ⑤ 상환부담 때문에(이자율이 너무 높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음)
- ⑥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 ⑦ 기타()

46.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대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 ② 재산요건 담보/보증인요건 등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 ③ 신청에서 대출받기까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 ④ 이자율이 높음
- ⑤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 ⑥ 모르겠다

⑦ 기타 ()

* 다음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필 요 성 정 도				
	매우 필요	필 요	보 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1) 긴급의료비 지원 (극빈실업자, 노약자, 복합 난민 등 빈곤자에게 의료증서를 교부하고 이것을 상품권처럼 가격을 표시,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대책)					
2) 긴급식품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가격이 표시된 식품증서를 교부)					
3) 구직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구직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4)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5)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통합전산망) (실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구인정보 제공)					

47. 다음과 같은 사업이 귀하 가구에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8. 장애인실업자를 위한 다음의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만 골라 표기하십시오.

- ① 실업전 가입한 의료보험 혜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 ② 월 의료보험료 50% 감면
- ③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또는 실비이용 확대
- ④ 긴급의료비 지원
- ⑤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 ⑥ 기타 ()

* 다음은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49. 다음 중 어떤 것이 귀하의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 ① 생활안정대책보다는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1번 문항으로)
- ② 고용유지 창출대책보다는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2번 문항으로)

49-1. 다음의 고용인정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 ②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 ④ 기업 고용안정 지원
- ⑤ 개인 사업자금 융자
- ⑥ 기타 ()

49-2. 생활안정대책 중 귀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공공근로사업
- ②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 ③ 의료보험료 50% 지원
- ④ 생활보호 확대
- ⑤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 ⑥ 장애인 관련서비스 확충
- ⑦ 사업자금 융자
- ⑧ 노숙자 보호(쉼터)
- ⑨ 각종 상담사업
- ⑩ 기타 ()

50. 귀하께서는 정부가 특별히 장애인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수당 지급
- ② 보장구 지급
- ③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 ④ 편의시설 확충
- ⑤ 수용시설입소기회 확대
- ⑥ 복지관, 재활원 등 이용시설 이용기회 확대
- ⑦ 가정봉사원제도 및 방문간호제도 확대
- ⑧ 기타 ()

51. 이밖에도 귀하께서는 장애인실직자를 위해 어떤 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 목 차

〈표1-1〉 재가 장애우의 경제활동 실태	13
〈표1-2〉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3
〈표1-3〉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실업률 비교	14
〈표1-4〉 장애유형별 실업실태	15
〈표1-5〉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직업분포 비교	15
〈표1-6〉 장애유형별 직업분포	16
〈표1-7〉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고용형태분포 비교	16
〈표1-8〉 장애유형별 고용형태분포 구성비	17
〈표1-9〉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현황	18
〈표1-10〉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18
〈표1-11〉 취업장애인의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구성비	19
〈표3-1〉 유형별 실업장애인의 분포 및 구성	33
〈표3-2〉 성별 분포	34
〈표3-3〉 연령분포	35
〈표3-4〉 학력 분포	35
〈표3-5〉 거주지 분포	36
〈표3-6〉 장애종류별 분포	36
〈표3-7〉 장애등급별 분포	37
〈표3-8〉 실업장애인의 결혼상태	38
〈표3-9〉 가구원수	38
〈표3-10〉 가구원중 장애우 수	39
〈표3-11〉 가구주 여부	39
〈표3-12〉 실업장애인의 주택소유 형태	40
〈표3-13〉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40
〈표3-14〉 실직장애인의 실직기간	41
〈표3-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41
〈표3-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42
〈표3-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42
〈표3-18〉 실직전 직종	43
〈표3-19〉 실직전 업종	43
〈표3-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44
〈표3-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45
〈표3-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46
〈표3-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46
〈표3-24〉 실직이유	47
〈표3-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48
〈표3-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48
〈표3-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49
〈표3-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49
〈표3-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50
〈표3-30〉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51
〈표3-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51

〈표3-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52
〈표3-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52
〈표3-34〉 실업 하의 생계수단	53
〈표3-35〉 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4
〈표3-36〉 연령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4
〈표3-37〉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5
〈표3-38〉 장애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5
〈표3-39〉 가구주여부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5
〈표3-40〉 실직자 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6
〈표3-41〉 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6
〈표3-42〉 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57
〈표3-43〉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57
〈표3-44〉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58
〈표3-45〉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59
〈표3-46〉 최저생계비 규모	60
〈표3-47〉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61
〈표3-48〉 구직활동 희망 여부	61
〈표3-49〉 구직희망 이유	62
〈표3-50〉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63
〈표3-51〉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63
〈표3-52〉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	64
〈표3-53〉 취업을 원하는 직종	65
〈표3-54〉 희망업종	66
〈표3-55〉 희망종사형태	66
〈표3-56〉 희망보수 수준	67
〈표3-57〉 생활보호사업 인지도	68
〈표3-58〉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68
〈표3-59〉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68
〈표3-60〉 생활보호사업신청후 수혜 여부	69
〈표3-61〉 지원액 규모	69
〈표3-62〉 생활보호사업 미수혜 사유	70
〈표3-63〉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70
〈표3-64〉 공공근로 사업 인지 여부	71
〈표3-65〉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72
〈표3-66〉 공공근로 사업 참여여부	72
〈표3-67〉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73
〈표3-68〉 실업급여 신청 여부	74
〈표3-69〉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74
〈표3-70〉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75
〈표3-71〉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	75
〈표3-72〉 직업훈련 희망여부	76
〈표3-73〉 희망직업훈련 종류	76

〈표3-74〉 실업자대부사업 인지 여부	77
〈표3-75〉 대부사업 신청 여부	77
〈표3-76〉 신청대부사업종류	78
〈표3-77〉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78
〈표3-78〉 대출금액 규모	79
〈표3-79〉 대출받지 못한 이유	79
〈표3-80〉 대출신청 안한 이유	80
〈표3-81〉 대부사업의 문제점	80
〈표3-82〉 정부프로그램중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81
〈표3-83〉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82
〈표3-84〉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82
〈표3-85〉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83
〈표3-86〉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83
〈표3-87〉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84
〈표3-88〉 사업대책의 기본방향	84
〈표3-89〉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85
〈표3-90〉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86
〈표4-1〉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87
〈표4-2〉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	88
〈표4-3〉 장애유형별 학력 분포	88
〈표4-4〉 장애유형별 거주지 분포	89
〈표4-5〉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분포	90
〈표4-6〉 장애유형별 결혼상태 분포	90
〈표4-7〉 장애유형별 가구구조 분포	91
〈표4-8〉 장애유형별 가구주여부	91
〈표4-9〉 장애유형별 가구원중 장애우수 분포	92
〈표4-10〉 장애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분포	92
〈표4-1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93
〈표4-12〉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93
〈표4-13〉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94
〈표4-14〉 장애유형별 실직전 비임금근로자 종사형태	94
〈표4-15〉 장애유형별 실직전 직종	95
〈표4-16〉 장애유형별 실직전 업종	96
〈표4-17〉 장애유형별 실직전 사업장 규모	96
〈표4-18〉 장애유형별 실직전 평균수입	97
〈표4-18-1〉 장애유형별 평균 임금	97
〈표4-19〉 장애유형별 취업기간	98
〈표4-20〉 장애유형별 퇴직금 수령여부	99
〈표4-21〉 장애유형별 실직이유	99
〈표4-22〉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실직여부	100
〈표4-23〉 장애유형별 실직후 건강변화	101
〈표4-24〉 장애유형별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101
〈표4-25〉 장애유형별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102
〈표4-26〉 장애유형별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102
〈표4-27〉 장애유형별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103
〈표4-28〉 장애유형별 부부, 가족관계 악화 정도	103

〈표4-29〉 장애유형별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104
〈표4-30〉 장애유형별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104
〈표4-31〉 장애유형별로 실직이 가족관계, 장애정도, 건강등에 미친 영향	105
〈표4-32〉 장애유형별 생계유지수단 현황	106~107
〈표4-33〉 장애유형별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108
〈표4-34〉 장애유형별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109
〈표4-35〉 장애유형별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109
〈표4-36〉 장애유형별 최저생계비 규모	110
〈표4-37〉 장애유형과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금간별 분포	111
〈표4-38〉 장애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112
〈표4-39〉 장애유형과 실업장애인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112
〈표4-40〉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장애유형별-	113
〈표4-41〉 구직을 원치않는 이유 -장애유형별-	114
〈표4-42〉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장애유형별-	115
〈표4-43〉 구직활동시의 가장 어려운점 -장애유형별-	116
〈표4-44〉 원하는 취업직종 -장애유형별-	117
〈표4-45〉 희망업종 -장애유형별-	118
〈표4-46〉 장애유형별 회망종사형태	119
〈표4-47〉 장애유형별 회망보수수준	120
〈표4-48〉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121
〈표4-49〉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121
〈표4-50〉 장애유형별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122
〈표4-5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122
〈표4-52〉 장애유형별 지원액수	123
〈표4-53〉 장애유형별 생활보호 미 수혜 이유	123
〈표4-54〉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124
〈표4-55〉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125
〈표4-56〉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125
〈표4-57〉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126
〈표4-58〉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26
〈표4-59〉 장애유형별 실업급여신청여부	127
〈표4-60〉 장애유형별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128
〈표4-61〉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128
〈표4-62〉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 현황	129
〈표4-6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희망여부	129
〈표4-64〉 장애유형별 회망직업훈련내용	130
〈표4-65〉 장애유형별 실업자 대부사업 인지여부	131
〈표4-66〉 장애유형별 대부사업신청여부	131
〈표4-67〉 장애유형별 신청대부사업내용	132
〈표4-68〉 장애유형별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132
〈표4-69〉 장애유형별 대출금액	132
〈표4-70〉 대출받지 못한 이유 -장애유형별-	133
〈표4-71〉 장애유형별로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3
〈표4-72〉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대부사업의 문제점	134
〈표4-73〉 장애유형별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135
〈표4-74〉 장애유형별 긴급식품권지원 필요성	136

〈표4-75〉 장애유형별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136
〈표4-76〉 장애유형별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필요성	137
〈표4-77〉 장애유형별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필요성	137
〈표4-78〉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의료대책의 필요성	138
〈표4-79〉 장애유형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139
〈표4-80〉 장애유형별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139
〈표4-81〉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안정대책중 핵심사업	140
〈표5-1〉 성별 분포	141
〈표5-2〉 연령분포 -성별-	142
〈표5-3〉 성별학력 분포 -성별-	143
〈표5-4〉 성별 거주지 분포 -성별-	143
〈표5-5〉 장애종류별 분포 -성별-	144
〈표5-6〉 장애등급별 분포 -성별-	145
〈표5-7〉 결혼상태 -성별-	146
〈표5-8〉 가구원수 분포 -성별-	147
〈표5-9〉 가구원중 장애우 수 분포 -성별-	148
〈표5-10〉 가구주 여부 -성별-	148
〈표5-11〉 주택소유 형태 -성별-	149
〈표5-12〉 성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성별-	150
〈표5-13〉 실직기간 -성별-	150
〈표5-14〉 성별 실직자유형 -성별-	151
〈표5-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성별-	152
〈표5-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성별-	152
〈표5-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성별-	153
〈표5-18〉 실직전 직종 -성별-	154
〈표5-19〉 실직전 업종 -성별-	155
〈표5-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성별-	155
〈표5-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성별-	156
〈표5-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성별-	157
〈표5-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성별-	158
〈표5-24〉 실직이유 -성별-	159
〈표5-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성별-	160
〈표5-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성별-	161
〈표5-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성별-	162
〈표5-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성별-	162
〈표5-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성별-	163
〈표5-30〉 실직후 부채증가의 정도 -성별-	164
〈표5-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성별-	165
〈표5-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성별-	166
〈표5-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성별-	166
〈표5-34〉 실직이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 -성별-	167
〈표5-35〉 생계유지수단 -성별-	167~168
〈표5-36〉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성별-	169
〈표5-37〉 실업장애인의 가구 총소득 -성별-	170
〈표5-38〉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성별-	171
〈표5-39〉 최저생계비 규모 -성별-	172

〈표5-40〉 실업장애우의 혼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성별-	173
〈표5-41〉 구직활동 희망 여부 -성별-	173
〈표5-42〉 성별구직희망여부 -성별-	174
〈표5-43〉 구직희망이유 -성별-	175
〈표5-44〉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성별-	176
〈표5-45〉 구직활동 유형 -성별-	177
〈표5-46〉 구직활동시 어려운점 -성별-	178
〈표5-47〉 원하는 취업직종 -성별-	179
〈표5-48〉 희망직종 -성별-	180
〈표5-49〉 희망종사형태 -성별-	180
〈표5-50〉 희망보수수준 -성별-	181
〈표5-51〉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성별-	182
〈표5-52〉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성별-	182
〈표5-53〉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성별-	182
〈표5-54〉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여부 -성별-	183
〈표5-55〉 지원액의 규모 -성별-	183
〈표5-56〉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이유 -성별-	184
〈표5-57〉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성별-	184
〈표5-58〉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 -성별-	185
〈표5-59〉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성별-	186
〈표5-60〉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성별-	186
〈표5-61〉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성별-	187
〈표5-62〉 실업급여 신청 여부 -성별-	188
〈표5-63〉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성별-	188
〈표5-64〉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성별-	189
〈표5-65〉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 -성별-	189
〈표5-66〉 직업훈련 희망여부 -성별-	190
〈표5-67〉 성별 희망직업훈련 종류 -성별-	190
〈표5-68〉 대부사업인지여부 -성별-	191
〈표5-69〉 대부사업 신청여부 -성별-	192
〈표5-70〉 신청대부사업 종류 -성별-	192
〈표5-71〉 대부신청 후 실제대출여부 -성별-	193
〈표5-72〉 대출받지 못한 이유 -성별-	193
〈표5-73〉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성별-	194
〈표5-74〉 대부사업의 문제점 -성별-	195
〈표5-75〉 긴급의료비지원필요성 -성별-	196
〈표5-76〉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성별-	197
〈표5-77〉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성별-	197
〈표5-78〉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성별-	198
〈표5-79〉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필요성 -성별-	198
〈표5-80〉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성별-	199
〈표5-81〉 실업대책에 대한 성별 필요성 -성별-	200
〈표5-82〉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성별-	200
〈표5-83〉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성별-	200
〈표5-84〉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성별-	201
〈표6-1〉 지체장애인의 장애부위	208

〈표6-2〉 지체장애인의 주택소유형태	211
〈표6-3〉 실직지체장애인의 실직후건강, 장애, 심리적스트레스변화정도	212
〈표6-4〉 실직지체장애인의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변화정도	213
〈표6-5〉 실업지체장애인의 생계수단	214
〈표6-6〉 실업지체장애인의 연령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214
〈표6-7〉 실업지체장애인의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215
〈표6-8〉 실업지체장애인의 현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215
〈표6-9〉 실업지체장애인의 현총기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215
〈표6-10〉 실업지체장애인의 현개인소득	216
〈표6-11〉 실업지체장애인의 구체적인 구직활동유형	217
〈표6-12〉 실업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시 가장어려운점	217
〈표6-13〉 실직지체장애인의 성별분포	219
〈표6-14〉 실직지체장애인의 연령 분포	220
〈표6-15〉 실직지체장애인의 학력분포	220
〈표6-16〉 실직지체장애인의 자격증 소지여부 및 직업훈련 여부	221
〈표6-17〉 실직지체장애인의 직종	223
〈표6-18〉 실직지체장애인의 업종	224
〈표6-19〉 실직지체장애인의 종사형태	224
〈표6-20〉 실직지체장애인의 보수수준	225
〈표6-21〉 실직지체장애인의 생활보호사업 비수혜이유	227
〈표6-22〉 실직지체장애인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227
〈표6-23〉 실직지체장애인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228
〈표6-24〉 실직지체장애인의 공공직업훈련내용	229
〈표6-25〉 실직지체장애인의 희망직업훈련내용	229
〈표6-26〉 실직지체장애인의 신청대부사업내용	230
〈표6-27〉 실직지체장애인의 대출 받지 못한 이유	230
〈표6-28〉 실직지체장애인의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230
〈표6-29〉 실직지체장애인의 대부사업의 문제점	231
〈표6-30〉 실직지체장애인의 사업필요도	232
〈표6-31〉 실업지체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233
〈표6-32〉 실직지체장애인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233
〈표6-33〉 실직지체장애인의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233
〈표6-34〉 실직지체장애인의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234
〈표6-35〉 장애영역별 직업교육 지도직종	239
〈표6-36〉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240
〈표6-37〉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1998학년도)	240
〈표6-38〉 삼육, 익산, 덕산 직업전문학교의 설치공과	241
〈표6-39〉 기관별 장애인 직업훈련실적(입소인원/중도탈락인원)	242
〈표6-40〉 '99 일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현황	243
〈표6-41〉 1999년 보장구 관련 시책	244
〈표6-42〉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현황	245
〈표6-43〉 취업알선 및 취업확정 현황	246
〈표7-1〉 시각장애인의 직장형태	250
〈표7-2〉 장애유형별 구인배율·알선율·취업율 비교	251
〈표7-3〉 시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53
〈표7-4〉 시각장애인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256

〈표7-5〉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256
〈표7-6〉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257
〈표8-1〉 장애유형별 구인·구직·알선·확정	263
〈표8-2〉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4
〈표8-3〉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267
〈표8-4〉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268
〈표8-5〉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수와 학생수	268
〈표9-1〉 특수학교(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275
〈표9-2〉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현황	275
〈표9-3〉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7
〈표9-4〉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278
〈표9-5〉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279
〈표9-6〉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전직종 및 업종	279
〈표9-7〉 실직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이유	279
〈표9-8〉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후 생활의 변화	280
〈표9-9〉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생계유지수단	281
〈표9-10〉 정신지체장애인의 연령, 거주지 특성, 실직자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282
〈표9-11〉 정신지체장애인의 현개인소득, 현총기구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282
〈표9-12〉 정신지체장애인의 현개인소득	282
〈표9-13〉 정신지체장애인의 가구소득감소액범주	283
〈표9-14〉 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희망여부	283
〈표9-15〉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회망종사형태	284
〈표9-16〉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284
〈표9-17〉 정신지체장애인의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286
〈표9-18〉 정신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점 * 실직자유형	286
〈표9-19〉 정신지체장애인의 회망직종 및 업종	287
〈표9-20〉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회망보수수준 범주	287
〈표9-21〉 정신지체장애인의 생활보호사업의 사용용도	288
〈표9-22〉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288
〈표9-23〉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288
〈표9-24〉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289
〈표9-25〉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회망직업훈련내용	289
〈표9-26〉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대부사업의 문제점	290
〈표9-27〉 정신지체장애인의 긴급의료비지원 필요정도	290
〈표9-28〉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291
〈표9-29〉 정신지체장애인의 실직자유형별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291
〈표9-30〉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안정대책중 중요사항	291
〈표9-31〉 정신지체장애인의 적성직업	294
〈표9-32〉 정신지체취업자의 취업분야와 직무내용	294
〈표9-33〉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295
〈표9-34〉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299

그 림 목 차

〈그림4-1〉 실업장애인 남녀 100명의 고용구조 -성별-

153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인쇄 : 1999년 12월 23일

발행 : 1999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활용

편집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137-061)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 02)521-5364 / 팩스 : 584-7701

Internet address : www.cowalk.or.kr E-mail : cowlak@chollian.net

편집디자인 · 인쇄 : 흥디자인(464-5167)